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66
----------	------

2017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성숙 의원(찬성자 9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결과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성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제6항(연고구단과의 수의계약 가능)이 2016년 8월 시행되어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표현을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 제3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안 제2조 ~ 제5조, 제7조 ~ 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사항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이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구단과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부칙(제5994호) 중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제2조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부칙 제3조를 삭제하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사고 발생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신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에서 사고 발생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돐구장 등 체육시설 ‘대관 허가조건’(붙임1.)에 체육시설 안전의 위해 발생시, 장내 질서가 어지러울 때, 기타 필요한 경우 사용

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삭제

- 제261회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15. 8. 4.)될 당시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15. 4. 7)이었고, 일 년 뒤인 2016년 8월 4일 시행되었음.

이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광고권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으로 그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조)로 하고, 위 개정 내용은 '17.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3조)고 규정함.

부칙 제2조의 경우 2015. 8. 20. 개정 조례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해 종전 조례 [별표5]를 적용하도록 한 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더라도 종전 계약 사용료의 근거는 연혁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법률적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붙임 2.), 부칙 제3조의 경우 상위법 개정으로 연고구단 사용·수익 수익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역〉

조례 조항(현행)	현행 조문	개정안 조문
제2조	의하여	따라
제3조	적합하게	맞게
제4조제1항	이용하고자 하는 부여되도록	이용하려는 주어지도록
제5조제1항	사용하고자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하려는 변경하려는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규정에	전용사용하려는 규정에도
제8조 제목	의한	따른
제9조제3항	규정에	규정에도
제11조의2제2항	의한다	따른다
제12조제2항제1호	현저한	뚜렷한
제15조	설치하고자 하는 소요되는	설치하려는 드는
제16조제3항 제16조제5항 제16조제9항	연장하고자 하는 위탁받하고자 하는 얻거나 계약 시	연장하려는 위탁받으려는 받거나 계약한 때
제20조	설치하고자 하는 얻어야	설치하려는 받아야

붙임 1. 체육시설 대관 허가조건 중 사용허가의 일시정지 규정 내용

연번	체육시설명	허가조건 중 사용허가의 일시정지 규정 내용
1	목동운동장	제5조(사용의 정지) 사용 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동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서남권 돔구장	제9조(사용허가의 일시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척스카이돔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2. 고척스카이돔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제7조 제9호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제기준 준수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4.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월드컵경기장	제6조(사용허가의 일시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경기장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2.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등
4	잠실종합운동장	5. 다음의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2) 장내 질서가 심히 어려울 때 3) 기타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장충체육관	제9조(사용허가의 일시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체육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2. 체육관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제7조 제9호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제기준 준수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4.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자문 의견서

I 자문배경

- 광고권 사용료 관련 조례개정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신설**
(15.8.20)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광고권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부칙으로 그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부칙 제2조), 위 개정내용은 17.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부칙 제3조) (15.8.20.)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부칙의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 규정 삭제 추진**
 -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16.8.4.시행)으로 연고구단 사용·수익 수익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법 제17조 제6항)
 - 종전 조례 부칙 상 연고구단 수익계약 근거 관련 유효기간을 삭제하며, 경과조치 규정도 함께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 예정임
(의원 발의, 제276회 임시회 상정 예정)

II 검토의견 [2017. 8. 7. 법률지원담당관]

- 자문 사항** :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규정) 삭제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가능성 여부

○ 결론

- 개정 조례에서 현행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규정)를 삭제하더라도 현행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개경쟁으로 체결했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규정 삭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논거

- 우선 부서에서 제시한 조례 개정 전후의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광고사용허가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잠실야구장 >

- 2014~2016 (계약기간 3년) : 공개경쟁입찰방식(스타애드컴),
- 2017~2019 : 수의계약(LG, 두산)

< 고척스카이돔(2015.11월 개장) >

- 2016 및 2017 (계약기간 1년씩) : 수의계약(넥센)

-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별표 5의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5.8.20.> (이하 ‘**현행 조례**’)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광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u>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u>
고	컬러 전광판 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u>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8.20. 개정 전> (이하 ‘**종전 조례**’)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광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u>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u>
고	컬러 전광판 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u>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u>

- 위 조례의 개정 경과를 보면, 2015. 8. 20. 전에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스타애드컴(광고대행사)은 **종전 조례 [별표 5]**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으로 상업사용료를 책정하였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별표 5]**는 프로구단이 수의계약을 통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상업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은 변경에 있어 종전 스타애드컴의 상업사용료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 [별표 5]**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의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이 2016. 8. 4. 시행되면서 **동 법 제17조제6항**에 의해 연고구단과의 사용·수익 수의계약이 가능해졌고 개정 조례안은 이와 궤를 맞추어 **종전 조례 [별표 5]**에 따르도록 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 현행 프로구단과의 계약은 수의계약(이하 ‘현행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 바, **현행 조례 [별표 5]**는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사용료를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 계약도 이에 맞게 체결된 것으로 사료됨.
- 그렇다면 부칙 제2조는 현행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아닌, 2015. 8. 20. 개정 조례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해 **종전 조례 [별표 5]**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인바, 조례 개정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더라도 종전 계약 사용료의 근거는 연혁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법률적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3조 중 “적합하게”를 “맞게”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하고 “부여되도록”을 “주어지도록”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전용사용하고자 하는”을 “전용사용하려는”으로 하며,

제7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제8조 제목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제11조의2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제12조제2항제1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하고,

제15조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제16조제3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하고,

제16조제5항 중 “위탁받하고자 하는”을 “위탁받으려는”으로 하며,

제16조제9항 중 “언거나 계약 시”를 “받거나 계약한 때”로 하고,

제20조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조례 제599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조 (설치) 이 조례에 <u>의하여</u>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 2조 (설치) ----- <u>따라</u> -----</p>
<p>제 3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 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u>적합하게</u> 하여야 한다.</p>	<p>제 3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p> <p style="text-align: right;">----- <u>맞</u></p> <p style="text-align: center;">----- <u>게</u> -----.</p>
<p>제 4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p> <p>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u>이용하고자 하는</u>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u>부여되도록</u>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 4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p> <p>① -----</p> <p style="text-align: center;">----- <u>이용하려는</u> -----</p> <p style="text-align: center;">----- <u>주어지도록</u> -----.</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 4조의 2 (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시장, 수탁자 또는 제 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2. <u>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u> 3. <u>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 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u>전용사용하고자 하는</u>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u>변경하고자 하는</u>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사용허가) ① ----- <u>사용하려는</u> ----- <u>변경하려는</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을 <u>전용사용하고자 하는</u>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용사용하려는</u> ----- ----- ----- ----- ③ ----- <u>규정에도</u>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권 수입에 <u>의한</u> 사용료) ① ~ ④ (생략)	제8조(관람권 수입에 <u>따른</u> 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제9조(입장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규정에도</u> ----- -----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u>의한다</u> .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따른다</u>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u>현저한</u> 위해발생시 2. (생략)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u>뚜렷한</u> 위해발생시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u>설치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u>소요되는</u>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 ----- ----- <u>설치하려는</u> ----- ----- ----- <u>드는</u> ----- -----</p>
<p>제16조(운영의 위탁)</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조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u>연장하고자 하는</u>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u>위탁받하고자 하는</u>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 ⑧ (생략)</p> <p>⑨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u>얻거나 계약</u>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운영의 위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연장하려는</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위탁받으려는</u> ----- ----- -----</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⑨ ----- ----- ----- <u>받거나 계약한 때</u> ----- -----</p>
<p>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u>설치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u>얻어야</u>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 ----- ----- <u>설치하려는</u> ----- ----- <u>받아야</u> ----- ----- -----</p>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5994호, 2015.8.20.>	부칙 <제5994호, 2015.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삭 제〉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